

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1. 21.

제 출 자 : 박종욱의원의 5인

1. 제안이유

-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조례 입법의 원칙에 부합하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평창군의회가 설치하는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띄어쓰기
 -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→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
-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(안 제2조)
 -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
-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(안 제3조)
 -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- 위원장에 대하여 규정(안 제4조)
 -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며, 위원장 대행은 최다선 의원이,
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장기재직자, 연장자 순으로 함.
-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56조

평창군의회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의회의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에 따라 평창군의회가 설치하는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①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본회의(이하 “본회의”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(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)의 심사를 포함한다.

③ 의회는 의원윤리 및 징계·자격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기간 내에 활동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 등을 한 안건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③ 위원은 동시에 둘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. 다만, 의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, 해당 위원 중에서 서로 뽑아 본회의에 보고하고, 그 보고 전이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 다만, 호선(互選)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장선거 예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호선할 경우 위원장의 직무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의원 장기재직자,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직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중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그 개회가 어려울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,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않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이나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의 본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거부·기피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③ 위원장과 간사 모두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의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, 그 호선(互選), 본회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에 따른다.

제7조(준용규정) 위원회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의회 회의 규칙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거나 구성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, 그 활동기간 및 존속기한은 계속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박종욱의원
연락처	(033) 330 - 2505

【관계 법령】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54조(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) 제48조제1항, 제52조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선거(이하 이 조에서 "의장등의 선거" 라 한다)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

-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